



## 보도자료

▶ 2009. 1. 21 배포  
▶ 총 6 쪽 (사진없음)

- ▶ 기업인력개발지원과 황우찬 과장  
이제학 사무관  
☎ 02-2110-7266(근로자 담당)
- ▶ 직업능력개발지원과 시민석 과장  
이상업 사무관  
☎ 02-2110-7273(실업자 담당)
- ▶ 근로복지공단 신용지원팀 김현길 팀장  
오동희 차장  
☎ 02-2670-0520

### 어려울 때일수록 자기 개발에 적극 나서야

#### - 비정규직, 실업자에게 훈련비 지원 외에 생계비도 대부 - (월 100만원 범위에서 비정규직 300만원, 실업자 600만원 한도)

- 노동부는 1월 21일부터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생계비대부사업을 실시한다.
  -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고, 휴업·감산 등으로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고용사정이 불안정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
    -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들이 생계비 걱정없이 훈련에 전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저리(2.4%)로 생계비를 대부해 주는 사업을 추진한다.
  - 금년도 생계비 대부사업은 16천명(비정규직 4천명, 실업자 12천명)을 대상으로 추진(596억원)되며,
    - 생계비는 월 단위로 100만원 범위에서 비정규직은 300만원까지, 실업자는 600만원까지 각각 대부하게 된다.
    - 대부시 담보능력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(신용보증료 1% 별도)을 해주게 된다.

- 생계비대부 대상 훈련은
  -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 △1개월 이상의 근로자수강지원금(이하 "수강지원금") 과정이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(이하 "카드제") 과정, △기술계학원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3개월 이상 훈련과정
  - 실업자의 경우 3개월 이상의 노동부 지원 실업자훈련 과정이 해당된다.
- 대부를 받고자 하는 비정규직근로자 또는 실업자는 대부대상자 요건, 직업훈련 실시요건 등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·지사(55개소)에 대부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.
  - 구체적인 대부대상, 대부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·지사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(www.Kcomwel.or.kr)를 참고하면 된다.
  - ※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요건 : 붙임1 참조
- 생계비대부 대상 훈련과정인 수강지원금과 카드제 과정의 경우 근로자가 훈련비에 대한 부담없이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(두 제도를 합하여 연간 100만원, 5년간 300만원 범위에서 지원).
  - ※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개요 : 붙임2 참조
- 이 두 제도의 특징은 사업주 주도의 훈련을 받기 어려운 근로자가 사업주의 승낙없이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(수강료의 50~100%) 한다는 점이다.
- 금년 들어 1.19까지 3.3만여명이 수강지원금과 카드제 과정에 참여 [수강지원금 28,185명(비정규직 5,074명 포함), 카드제 4,508명] 하여 고용의 질과 취업의 기회를 높이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있다.

-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.2%('08년 동기 수강인원 26,545명)가 증가된 것으로 경기침체로 고용불안이 가중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나 중소기업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능력개발훈련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.

- ※ '08년 훈련인원 : 31.6만명(수강지원금 287,863명, 카드제 29,337명)
- ⇒ 주요 훈련과정 : 용접, 전기공사, 건축시공, 건설기계(굴삭기, 지게차), 시설관리, 고압가스, 동력배선, 열냉동설비, 차량정비, CAD, 사출금형 설계, 출판·편집, 마케팅과정 등
- ※ 훈련기관, 수강과정 내용, 지원프로세스 등 자세한 사항은 직업능력 개발종합정보망(www.hrd.go.kr) 참고

○ 앞으로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들이 생계비대부와 훈련비 지원제도를 활용할 경우 금전적 부담없이 훈련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.

□ 노동부 조정호 직업능력정책관은 “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고용불안에 노출된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실직 경험 없이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자기 주도의 능력개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”고 강조하면서

○ “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들이 훈련비와 생계비 걱정없이 마음 놓고 훈련에 참여하여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”고 하였다.

<붙임1>

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요건

구분	대부요건
지원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비정규직 :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2,40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근로자</li> <li>○ 실업자(이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배우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자인 경우 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2,400만원 미만인 자</li> <li>- 배우자가 없으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18세 이하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 하는 자</li> <li>- 「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단독세대주인 자</li> </ul> </li> </ul> <p>※ 다만, 「고용보험법」 제4장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제외</p>
지원대상 훈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통 :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집체훈련</li> <li>○ 비정규직 : 1개월 이상의 수강지원금·카드제 수강생 또는 3개월 이상의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기술계학원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과정의 수강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어학, 취미·오락·교양·스포츠 등의 훈련과정 훈련, 인터넷 원격 훈련, 주말반 훈련과정 제외</li> </ul> </li> <li>○ 실업자 : 3개월 이상의 노동부 지원 실업자훈련 과정의 수강생</li> </ul>
대부수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월 단위 100만원(비정규직 300만원, 실업자 600만원) 한도</li> <li>※ 직업훈련 중 생계비 대부를 받던 비정규직근로자가 훈련을 계속 받기위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에는 600만원 한도</li> </ul>
이율 및 상환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이율 2.4%(신용보증료 1% 별도),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</li> </ul>
제출서류 및 제출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출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통 : △대부신청서, △서약서</li> <li>- 비정규직 : △근로계약서, △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, △훈련기관이 발행한 수강증, △퇴직(휴직)증명서(해당자만)</li> <li>- 실업자 : △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원, △배우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(배우자가 4대보험 가입자 또는 사업자등록자인 경우 소득금액 확인용)</li> </ul> </li> <li>○ 제출방법 : 인터넷신청(www.kcomwel.or.kr)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(지사)에 방문·우편 제출</li> </ul>
문의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근로복지공단 신용지원팀 및 각 지역본부·지사</li> <li>- 근로복지공단(www.kcomwel.or.kr),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(kwelfare.kcomwel.or.kr)</li> </ul>

<붙임2>  
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개요

(1) 수강지원금

구분	지원 조건										
지원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지원대상이 됨</li> <li>- 이직예정인 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수로 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</li> <li>- 40세 이상 자</li> <li>-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자</li> <li>- 비정규직근로자 : △ 「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△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, △ 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견근로자, △ 「고용보험법」 제2조에 따른 일용근로자</li> <li>-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자영업자</li> </ul> <p>※ 훈련대상자 적격여부 판단은 훈련개시 당일을 기준</p>										
지원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(일반과정, 외국어과정, 인터넷 원격훈련과정)을 자비로 수강하고, 소정출석일수(시간)의 80%이상 출석하여야 함</li> </ul>										
지원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연간 100만원(5년간 300만원) 한도에서 지원하되, 훈련과정별로 다음과 같이 지원기준을 달리함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>훈련과정</th> <th>지원 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일반과정</td> <td>납부한 수강료의 80%(비정규직 100%). 단,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표준훈련비의 100% 한도내 지원</td> </tr> <tr> <td>일반과정 중 음식·기타 서비스업</td> <td>수강료의 50%(비정규직 80%). 단,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표준훈련비의 50%(비정규직 80%) 한도내 지원</td> </tr> <tr> <td>외국어과정</td> <td>수강료의 50%(비정규직 80%). 단, 40시간 기준 90,000원 한도내 지원</td> </tr> <tr> <td>인터넷원격훈련과정</td> <td>수강료의 100%. 단,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한도내 지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훈련과정	지원 기준	일반과정	납부한 수강료의 80%(비정규직 100%). 단,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표준훈련비의 100% 한도내 지원	일반과정 중 음식·기타 서비스업	수강료의 50%(비정규직 80%). 단,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표준훈련비의 50%(비정규직 80%) 한도내 지원	외국어과정	수강료의 50%(비정규직 80%). 단, 40시간 기준 90,000원 한도내 지원	인터넷원격훈련과정	수강료의 100%. 단,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한도내 지원
	훈련과정	지원 기준									
	일반과정	납부한 수강료의 80%(비정규직 100%). 단,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표준훈련비의 100% 한도내 지원									
	일반과정 중 음식·기타 서비스업	수강료의 50%(비정규직 80%). 단,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표준훈련비의 50%(비정규직 80%) 한도내 지원									
	외국어과정	수강료의 50%(비정규직 80%). 단, 40시간 기준 90,000원 한도내 지원									
인터넷원격훈련과정	수강료의 100%. 단,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한도내 지원										
훈련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(직업훈련시설, 학원, 평생교육시설 등)</li> </ul>										
훈련비 신청 및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비로 훈련과정을 수강하고, 훈련출석일수(시간)의 80%이상 출석하여 수료한 근로자는 “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”에 자비 부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(훈련기관에서 일괄 제출 가능)</li> <li>※ 신청서는 직업훈련정보망(www.hrd.go.kr)-알림마당-HRD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</li> <li>※ 직업훈련정보망(www.hrd.go.kr)에서 근로자수강료 지원과정에 대한 검색 가능</li> <li>○ 수강지원금은 지방노동관서에서 신청인 개인 계좌로 입금</li> </ul>										
문의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</li> </ul>										

(2) 카드제

구분	지원 조건																	
지원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비정규직근로자</li> <li>- 「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</li> <li>-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</li> <li>- 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견근로자</li> <li>- 「고용보험법」 제2조에 따른 일용근로자</li> </ul> <p>※ 훈련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은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, 카드유효기간 중 실업자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도 지원</p>																	
지원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(일반과정, 외국어과정, 인터넷 원격훈련과정)을 수강하고 훈련과정 수료여부, 출석률 및 학습진도율에 따라 지원</li> </ul>																	
지원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연간 100만원(5년간 300만원) 한도에서 지원하되, 훈련과정별로 다음과 같이 지원기준을 달리함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훈련과정</th> <th colspan="2">지원 기준</th> </tr> <tr> <th>수료시</th> <th>미수료시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일반과정</td> <td>수강료의 100%</td> <td>수강료의 100% × 출석률</td> </tr> <tr> <td>일반과정 중 음식 서비스업, 기타서비스업</td> <td>수강료의 80%</td> <td>(수강료-자비부담분) × 출석률</td> </tr> <tr> <td>외국어과정</td> <td>수강료의 80%(20시간 기준 54,000원 범위)</td> <td>(수강료-자비부담분) × 출석률</td> </tr> <tr> <td>인터넷원격훈련과정</td> <td>수강료의 100%</td> <td>                     학습진도율에 따라 지원                      - 80% 미만인 경우 : 수강료의 100% × 학습진도율                      - 80% 이상인 경우 : 수강료의 80%에 해당하는 금액                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훈련과정	지원 기준		수료시	미수료시	일반과정	수강료의 100%	수강료의 100% × 출석률	일반과정 중 음식 서비스업, 기타서비스업	수강료의 80%	(수강료-자비부담분) × 출석률	외국어과정	수강료의 80%(20시간 기준 54,000원 범위)	(수강료-자비부담분) × 출석률	인터넷원격훈련과정	수강료의 100%	학습진도율에 따라 지원 - 80% 미만인 경우 : 수강료의 100% × 학습진도율 - 80% 이상인 경우 : 수강료의 80%에 해당하는 금액
	훈련과정		지원 기준															
		수료시	미수료시															
	일반과정	수강료의 100%	수강료의 100% × 출석률															
	일반과정 중 음식 서비스업, 기타서비스업	수강료의 80%	(수강료-자비부담분) × 출석률															
외국어과정	수강료의 80%(20시간 기준 54,000원 범위)	(수강료-자비부담분) × 출석률																
인터넷원격훈련과정	수강료의 100%	학습진도율에 따라 지원 - 80% 미만인 경우 : 수강료의 100% × 학습진도율 - 80% 이상인 경우 : 수강료의 80%에 해당하는 금액																
훈련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(직업훈련시설, 학원, 평생교육시설 등)</li> <li>- 훈련기관에 카드를 제시하고 훈련 수강</li> </ul>																	
카드 및 훈련비 신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근로자능력개발 카드신청서 [온라인 신청(www.hrd.go.kr) 또는 방문]에 근로계약서 사본(일용직 제외)을 첨부하여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의 직업능력개발과(기획총괄과)에 제출</li> <li>- 인터넷 신청시 근로계약서 제출방법은 △우편 △팩스 △첨부파일(스캔)</li> <li>※ 카드신청은 지역 또는 사업장과 관계없이 전국 고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</li> <li>○ 훈련종료 후 훈련기관의 비용신청에 따라 훈련기관에 훈련비 지급</li> <li>※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조치</li> <li>⇒ 훈련과정 제1회 미수료시 지원 한도액에서 20만원, 제2회 미수료시 30만원 삭감하고, 제3회 미수료시 훈련생은 능력개발카드의 잔여 유효기간동안 수강이 제한 및 능력개발카드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간 능력개발카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</li> </ul>																	
문의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</li> </ul>																	